



노인 권리 협약 관련 국제 동향과 쟁점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목차

1. 서론

2. 노인인권 문제 제기 배경

3. 국제사회 인권규정 하의 노인인권 보호

4. 국제사회 노인인권 보호 규정의 문제점

5. 국제사회의 노인인권보호 증진노력 현황

6. 노인인권 협약 제정을 위한 노력과 쟁점

7. 결론: 전망과 한국사회의 함의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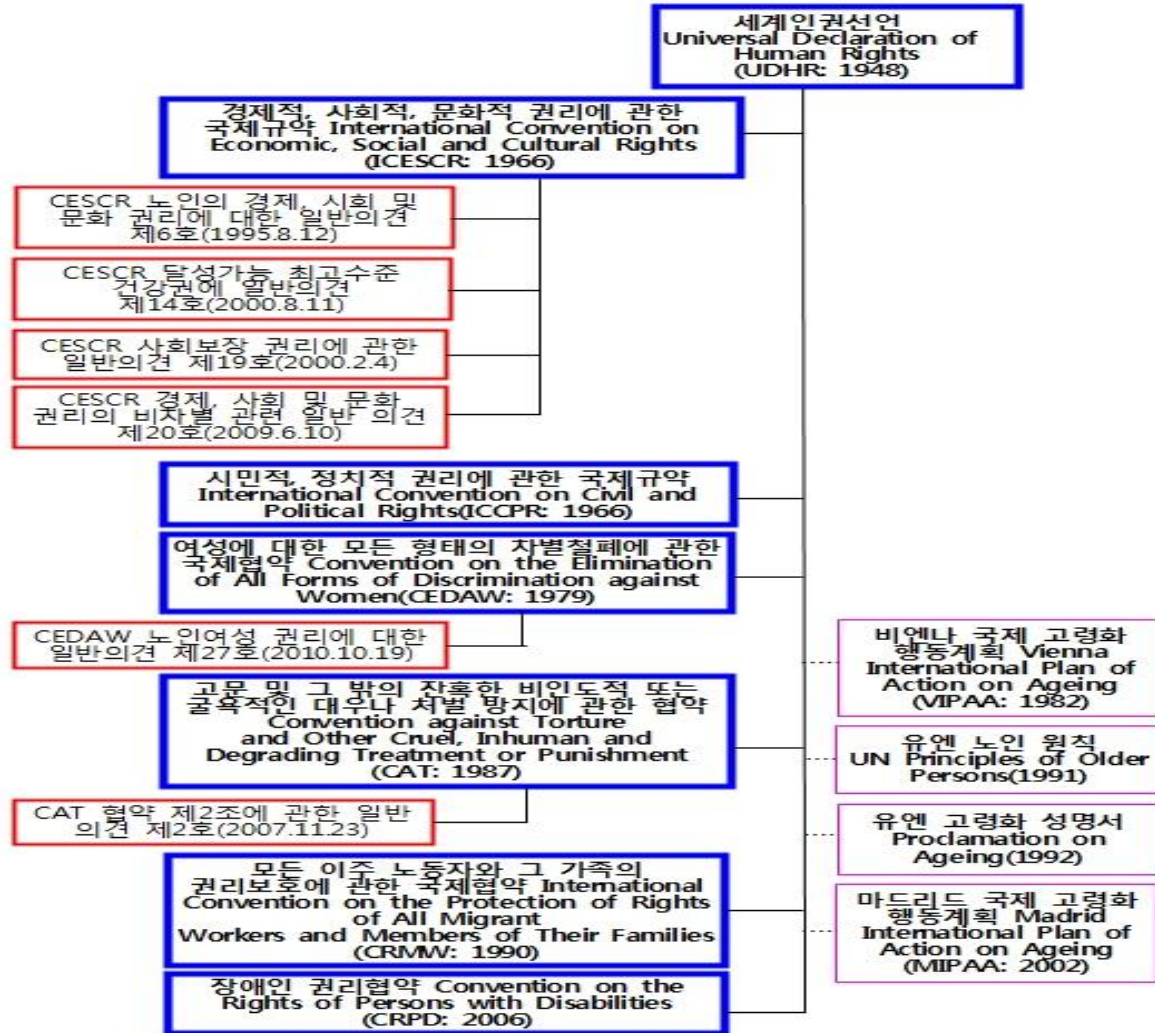
- 인권: 국적, 출신국, 거주지, 지역, 성별, 인종, 피부 색, 언어, 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
- 인권은 나이로 인하여 결코 훼손 되거나 변하지 않음
- 개인, 집단,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노인의 인권 향유에 어려움과 위협 많음
-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협약 제정으로 인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기존 국제인권규정(협약과 권고)은 규정미비, 이행 미비 및 관련규정의 산재 등으로 노인에게 적용에 문제 많음-> 새로운 노인권리협약 제정 필요성 제기
- 국제사회에서는 노인권리협약의 제정을 둘러싼 논쟁 이 계속되고 있음

노인인권 문제 제기 배경

- 노인권리가 국제사회의 처음 관심사가 된 시기: 1980년대 초반
- 노인권리가 국제사회 본격적 관심사가 된 시기: 2000년대 중반
- 1980초반-2000년대 중반의 20여년간 인권문제 제기 배경:
 - 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 사회적 변화-> 다양한 노인문제/인권문제
 - UN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권고 제시: 제1,2차 UN 세계고령화총회 및 정책 권고
 - 다른 취약인구(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기존 권리협약 제정에 대한 비형평성

국제사회 현행 인권보호 규정하의 노인인권 보호

1. 노인인권 관련 국제인권 규정



출처: UN OHCHR & UNDESA (2011).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그림 1> 노인인권 관련 국제 규정 체계

국제사회 현행 인권보호 규정하의 노인인권 보호

2. 현행 국제규정 중 노인인권에 적용가능 규정의 수

권리항목	협약/권고	본문조항	위원회 의견
1. 평등·비차별 2. 적절 생활 수준 3.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4. 과학진보 이익 향유 5. 근로(노동) 6. 사회보장 (사회보호) 7. 교육 8. 사생활 자유 9. 자유·안전 10. 공무수행 참여 11. 법 앞의 평등/ 효과적 시정조치 접근 12. 가정생활	세계인권선언(1948)	10	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1966)	7	7
	시민,정치적 권리규약(1966)	7	0
	여성 차별철폐 협약(1979)	7	7
	고문 등 방지 협약(1987)	0	1
	이주노동자·가족 권리 협약(1990)	1(연령차별 금지 명시)	
	장애인 권리협약(2006)	9	0
	비엔나행동계획(VIPAA)(1982)	거의 대부분 관련	
	UN 노인 원칙(1991)	일부 관련	
	UN 고령화 성명서(1992)	일부 관련	
	마드리드행동계획(MIPAA)(2002)	10개 인권항목/거의 대부분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규정의 문제점

1. 규정미비(normative gap) 문제

- 노인적용 규정부재/표현 불확실성: “노인”, “연령(차별)” 표현 부재, 여성/장애노인에게만 적용
- 노인 특수성과 노인인권 포괄성 미반영: 의료적 학대로부터의 자유, 착취로부터의 자유, 독립생활, 재산, 장기요양, 자율, 자아실현, 존엄사, 환경안전, 이동 자유,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 등 (노인인권 보호 포함 사항 참고-다음 슬라이드)

2. 이행미비(implementation gap) 문제

- UN 정책 권고/UN 협약·규약(convention or covenant)의 미이행

3. 노인인권 관련 규정 산재(散在) 문제

- 국제인권관련 여러 규정에 산재: 체계성/통일성/포괄성 부재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규정의 문제점

<참고>

노인인권 보호에 포함되어야 할 규정

1. 비차별
2. 자율과 독립
3. 법앞의 평등
3. 자아실현
4. 존엄사
5. 효과적인 사회참여
6. 주거 장소 자유
7. 주거 확보 및 안전/편리
8. 안전/편리한 환경
9. 접근 용이성과 이동성
10. 독립생활 위한 장기 보호
11. 가족과의 생활/사생활 자유
12. 고문/잔혹/비인간 처우 자유
13. 노동
14. 기본수준 생활유지
15. 사회보장
16. 정보
17. 교육
18. 자산 소유
19. 정당한 권리구제
20. 표현의 자유
21. 이동의 자유
22. 결사 및 단체참여 자유

Source: 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GAROP) (2016), In Our Own Words: What Older People Say about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n Old Age

1. UN 차원

1) UN 인권법안에서의 반영 노력

- 세계인권선언(UDHR)과 연계된 노력: 처음부터 협약 형태로 제정 노력 있었음(국제인권법안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의 계획)/UN Argentina 대표의 “노년권리 선언 결의 초안(Draft Resolution on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 제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정 시 노인관련 규정 삽입 시도: 규약 제정 시 인도 대표의 분명한 노인인권 사항 삽입 주장

2) UN의 정책 권고

-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VIPAA, 1982): UN 인권선언의 모든 권리 노인에게 적용 확인
- UN 노인 원칙(UNPOP, 1991): 5원칙(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과 관련 정책권고 사항 18가지 제시(대부분 노인인권 관련사항)
- UN 고령화 성명서(UNPA, 1992):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1992-2001년 10년간 고령화 관련 혁신적 정책추진을 국제사회 및 회원국 권고(대부분 노인인권 사항)
-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 2002): 노인의 차별없는 사회발전 참여 권리 포함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증진이 연령 통합사회 구축에 필수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위한 국제인권규정 이행 촉구

3) UN총회 보고

- 2002년 이후 MIPAA 이행사항 매년 UN 총회 보고
- 2008. 7/2008. 12. 총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노인인권 관련 보고 UN 사무총장에 요청
- 2009. 7 총회: 노인권리 보호 현황 보고
- 2010. 7 총회: 노인에게 특별히 초점 둔 인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보장 차질 발생 보고
- 2010. 12 총회: 노인인권관련 국제규정 미비점 검토와 해결방법 모색 위한 공개실무집단(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구성결정
- 2012. 12 총회: OEWGA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권리협약안 제안 요청

4) UN 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임명

- 2014. 5. 14. 3년 임기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임명

2. 지역 차원 노력

1) 유럽지역(European Union: EU)

- 유럽사회헌장(1996년 개정): 노인 사회보호권 규정
- 유럽연합기본권헌장(2000년): 노인권리 명확 규정

2) 미주지역(American Region)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영역에서의 인권협약 추가 의정서(1988년 제정): 모든사람 권리 재확인
- 브리질리아 선언(2007년): 노인 인권과 자유 보장 의 법적 틀과 이행 모니터링 장치 마련, 지역 노인 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와 협상 진행 결의
- 미주노인권리보호협약(2015년): 미주국가기구 의회는 2015. 6. 15에 세계최초로 지역의 국제 노인권리협약(Inter-American Co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의결/각국의 서명과 비준 절차 시작

3) 아프리카 지역

- 아프리카연합에서 2014년 아프리카 인권헌장 의정서(Protocol) 초안 작성(17개 노인권리 조항 포함)

4) 아시아-태평양 지역(Asia-Pacific Region)

- 지역전체의 인권/노인권리 증진 노력 상당히 미흡
- ASEAN 지역의 진전된 인권보장 노력: 아세안 국민과 정부의 기본적 의무 선언(1983년)에서 “연령”에 적합한 권리보장 선언; 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2007년) 채택과 이에 따른 ASEAN 인권기구인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 창립(2010년); 아세안 인권선언 채택(2012년) (노인을 취약인구로 규정, 타인과 같은 권리 보장)

3. 비정부 조직(NGO) 차원 노력

- 미국 국제장수센터(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와 연대활동 국제단체의 노인권리선언 UN 제2차 고령화총회(2002년)에 제출
- 국제 NGO의 노인권리세계연대(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GAROP: 145개 단체) 결성: OEWGA 정기회의에서 GAROP전체/개별로 의견서 제출, 정부대표들과 의견교환, 회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
- 미국 시카고 루즈벨트대학교 존마셜법학대학원의 “시카고 노인권리선언”(2014년)
- HelpA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노인권리 협약”(2015년)

새로운 노인인권 협약 제정을 위한 노력과 쟁점

1. 노인인권증진 공개실무집단 회의 진행 현황

<표 2> 노인인권 보호·증진 UN공개실무집단(OEWGA) 회의 내용(2011-2016)

회의 차수 및 시기	참가국 수	주요 회의내용 및 결정 사항
제1차 회의 (2011.4. 18-21)	68개국 (회원국의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토의 필요성 인정과 현재까지의 노인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했음에 합의 • 기존 국제 인권규정 내의 노인인권 보호 강화 방법 논의 및 노인인권특별보고자 제 도입 제안 • 새로운 노인인권협약 도입 필요성 제안도 있었음 • 결정 사항 없었음
제2차 회의 (2011. 8. 1-5)	50개국 (회원국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국제 인권규정 하의 노인인권 보장 강화 방안 토의 • 합의 또는 결정사항 없었음
제3차 회의 (2012. 8. 21-24)	63개국 (회원국의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 많이 참석 • 선진국들은 기존 국제인권 규정 하에서 강화방안을 주장/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노인인권협약 필요성 주장 • 합의 또는 결정 사항 없었음
제4차 회의 (2013. 12-15)	64개국 (회원국의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으로 회원국가 NGO간의 대화 진행 • 특히 Africa 지역 국가들의 새 협약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단일 목소리 나타남 • 새로운 노인인권 협약 도입에 대한 의견 양분 • 합의 또는 결정 사항 없었음
제5차 회의 (2014. 7.30-8.1)	57개국 (회원국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들은 새 노인인권협약 도입에 대해 강력히 찬성 • 회원국들은 새 노인인권협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의견 양분 • 의장은 기존 규정에 의한 강화 방안과 새 협약 도입 방안 2가지 논의 제의 • 합의 또는 결정 사항 없었음
제6차 회의 (2015. 7. 14-16)	63개국 (회원국의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들은 새 노인인권협약 도입을 반대하고 개발도상국은 찬성함 • NGO들은 새 노인인권협약 도입 적극 찬성 • 합의 또는 결정 사항 없었음
제7차 회의 (2016. 12. 12-15)	47개국 (회원국의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들의 반대이견과 개발도상국의 찬성의견이 일반적 • NGO들은 새로운 노인인권협약 도입 적극 찬성 • 회원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참석 인정

2. 노인권리 협약 제정에 대한 찬·반 이유

1) 찬성 이유

- ① 기존 인권협약에 노인관련 규정 거의 없음 (규정미비)
- ②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 ③ 기존 인권협약의 노인 특수성 미감안(규정미비)
- ④ 기존 인권협약/정책권고 미준수(이행 미비)
- ⑤ 기존 인권관련 규정에 노인권리 관련 규정 산재
- ⑥ 협약은 회원국에 이행의무 부과
- ⑦ 국내외적으로 노인권리에 대한 의식 제고
- ⑧ 연령주의(ageism) 개선 주요 수단
- ⑨ 사회적 비용의 노인 사회적 공헌에 의한 보충
- ⑩ 타인 취약구집단에 비한 비형평성

2) 반대 이유

- ① 기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은 모든 사람과 노인에게 공히 적용 가능
- ② 기존 국제 정책권고의 이행의무 강화로 규정미비 문제 해결 가능
- ③ 노인권리협약은 국제협약 준수에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대시킴
- ④ 노인권리협약의 협상에 시간 너무 많이 걸림
- ⑤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안이 마련되어도 비준과 이행의 보장 없음
- ⑥ 국제 노인권리협약은 지역적 특성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음
- ⑦ 노인권리에 대한 관심집중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할 수 있음

3) 쟁점

- (1) 규정미비 대 이행미비
- (2) 노인특성 고려 문제
- (3) 노인관련 인권규정의 산재성 대 종합체계화
- (4) 시혜적/치료적 복지시각 대 인권 시각
- (5) 지역특성 감안 대 보편적 규정
- (6) 사회적 비용 증가 대 사회적 공헌으로 보충
- (7) 취약인구 관점 대 일반 인구 관점
- (8) 긴급 대 여유 대처
- (9) 타 취약인구집단과 비교한 노인인구집단의 권리협약 없음의 비형평성

결론: 전망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1. 새로운 국제 노인인권협약 제정에 대한 전망

- OEWGA에서의 선진국 반대와 개발도상국 찬성 입장의 대립 계속(2016년 제7차 OEWGA까지)
- 2012년 UN총회의 OEWGA에 대한 새로운 인권 협약 제정 고려 요청
- 다른 취약인구 대상 국제 인권협약 제정 10년 이상 시간 소요
- 지역의 노인인권 관련 규정 존재/협약 제정 또는 제정 준비로 국제규정 제정의 시간상 절박성 약화
- 국제 노인권리협약 제정에는 향후 상당한 시간 (적어도 4-5년) 이상 소요 예상

결론: 전망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2. 국제노인권리협약 제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보장에 관한 소극적 입장
 - 노인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국내적 관심 부족
 - 노인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나 노인복지 서비스 단체의 노인인권 문제 관심 저조
 - 노인인권 정의 불분명/"노인학대"로 한정적 정의
 - 노인인권 보호의 사회적 추가 비용 증가 우려
 - 노인인권 관련 정부부서간 정책협조 미비
 - 노인인에 대한 국가적 입장 정리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정부부처와 별도)의 UN OEWGA 참석 및 인권협약 찬성 입장 적극 표현 필요
- 국가인권위원장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회 고령화 실무그룹 위원장으로서의 적극 역할 기대
-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정부(복지부)의 적극찬성 입장 표명이 바람직함: 아동/여성/장애인 국제 인권협약 비준, 2006년에 제정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적극적 찬성 입장 고려, 급속한 고령화 해결책 고려

결론: 전망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3. 국제사회 노인인권 강화추세와 정부와 민간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 노인인권관련 국제규정 준수 적극적 노력: 법령정비
- 국가인권위의 노인인권 UN실무집단회의 적극 참석
-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 노인인권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시행
- UN MIPAA의 적극적 이행 및 이행 보고서 제출
- 국민에 대한 노인권리 보호·증진 의식 강화 노력
- 정부부처 간의 기밀한 협조 요망

2) 민간의 역할

- 노인권리 당사자집단(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등)의 적극적 관심 촉구 및 UN 회의 참석
- 노인복지 서비스 단체와 NGO의 노인인권 보장에 관심 촉구 및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



Thank You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